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일러두기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 온라인 상담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사례 중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정 등으로 인한 적용 시점에 따라 관련 질의에 대한 최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리는 각 학교급별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의 수록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우선하지 않습니다.
- 본 사례집은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가 있으실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탑재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될 수 있는 학교급을 의미합니다.

2022학년도 질의·회신 사례이므로 해당 질의의 근거로만 이해하시고, 2023학년도에는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근거를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집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자료실]-[참고자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다운 받아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집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키워드 색인을 수록(색인 페이지 적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로 질의하시기 전 질의 내용에 따른 문의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나이스 지원센터: 시스템 처리 방법, 학생부 검증 오류 등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나이스 상담센터 전화번호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포털 우측 상단의 나이스지원([나이스광장]-[사용자 지원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나이스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학생평가 지원센터(043-931-0310): 학생평가 관련 사항 등
 - 학생평가 지원포털(<https://stas.moe.go.kr>)을 통해 학생평가 관련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소속 시·도교육(지원)청: 시·도별 봉사활동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누가기록 입력 방법, 학적 세부사항 등
- 관련 법령 및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관련 사항은 [교육부]-[정책]-[초·중·고 교육]에 탑재되어 있는 "2022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CONTENTS

1 인적·학적사항(공통)	6
2 출결상황(공통)	19
3 수상경력(중·고등학교)	25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등학교)	26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30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63
7 자유학기 활동상황(중학교)	70
8 독서활동상황(중·고등학교)	74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78
10 정정사항(공통)	80
11 기타사항 등(공통)	87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 변경, 정정, 영주증



Q1

사례1

학생의 성명은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성과 이름 사이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학교생활기록부에 외국인 학생의 성명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에는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고, 학부모는 학생의 성명을 한글로 표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해 정정해야 할지, 아니면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적] 메뉴에서 수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3

외국인 학생 중 성명 표기방식 변경(영문명에서 한글 성명으로)을 희망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이 정정의 증빙서류로 영주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영주증에 영문과 한글 성명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성명의 표기 방식 변경 정정의 증빙서류로 '영주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A1

사례1

외국인 학생의 성명은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 성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그대로'라 함은 공백 여부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되어 있는 성명에 공백이 있는 경우 공백까지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2

표기방식 변경을 포함한 개명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합니다. 아울러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3

네. 외국인의 경우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근거로 성명을 입력하고 있으며, 영주증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므로 영주증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표기방식 변경 정정의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8쪽, 중 39쪽, 고 37쪽)

① 학생정보

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표기된 영문 또는 한글의 성명과 성별을 그대로 입력한다.

※ 증빙서류에 학생의 성명이 영문과 한글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성명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9쪽, 중 39~40쪽, 고 37~38쪽)

[학생정보 변경 시 처리 방법]

가. 신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수정' 처리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생정보 변경은 '정정' 처리한다. 다만, 신입생의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정정' 처리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의 주소는 별도 정정절차 없이 교육정보시스템의 {누가주소등록} 탭에서 처리한다.

※ 개명(표기방식 변경 포함)으로 인한 정정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학생 본인의 개명 이력이 표기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여권 등)을 근거로 함.

※ 학생정보 정정의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3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법률 제18397호)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③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이하 "영주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입사실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입학, 재취학, 편입학, 유예, 정원 외 학적관리



초등학교에서 유예 후 정원 외 학적관리되던 학생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중학교 1학년(또는 2~3학년)에 입학(재취학)이 가능한지 또는 중학교에서 유예 후 정원 외 학적 관리되던 학생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치르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또는 2~3학년)에 입학(편입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입학은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 고등학교 입학은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상급학교로 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급학교 입학(재취학 또는 편입학)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제43조(입학자격 등)

-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83호)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3. 종전의 「소년원법」(법률 제7076호 소년원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9조 제4항에 따라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5.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제5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중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설비 및 수익용기 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5.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중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7. 외국에서 9년 이상 또는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8. 제7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외에 교육부장관이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8쪽)

바. 재취학

- 1) 의무교육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중단하였다가 의무교육연령 내에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학년, 학교 및 학교급을 달리하여도 재취학으로 처리한다.
- 2) 유예·면제된 자가 재취학할 때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학구가 변동된 경우에는 타교에 재취학할 수 있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36쪽)

다. 편입학

- 1)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이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 2) 고등학교의 장은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와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1년 이상(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이후 편입학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가 편입학 신청 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청인의 학교 외 학습경험에 관한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편입학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4(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생사항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사항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외국학교명, 외국학교 재학 사실



Q3

사례1

외국 학교 재학으로 학업을 중단(면제, 자퇴 등)하였다가 2022년 9월에 재취학(편입학 등)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외국학교명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이 경우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외국학교명을 쓰지 않고 '미국 중학교 재학'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사례2

작년(2021학년도)에 2학년으로 재취학(편입학 등)한 학생의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외국학교 수학 사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정정 처리를 통해 삭제해야 하나요?



A3

사례1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기록은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즉, '미국 중학교 재학'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2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2022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하므로 2021학년도에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맞게 입력된 내용은 삭제 등의 정정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2020~2021학년도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실제 학교명이 표기된 경우 2021학년도의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정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일러두기)

■ 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은 2022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합니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3~44쪽, 중 45쪽, 고 42쪽)

4) 귀국학생 등이 외국학교에서 수학한 같은 기간의 기록은 학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록이 아니므로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지 않는다.

[초] <예시> 2022학년도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인 학생이 2024학년도에 다시 들어온 경우

학적사항	2022년 03월 02일 □□초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6월 27일 유예) 2024년 04월 01일 ○○초등학교 제3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2.06.27. 장기결석으로 인한 유예 2022.06.28. 정원 외 학적관리

[중] <예시> 학업을 중단(면제)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

	2022년 02월 14일 □□초등학교 제6학년 졸업 2022년 03월 02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2022년 07월 18일 면제) 20○○년 ○○월 ○○일 ○○중학교 제3학년 재취학
특기사항	2022.07.18.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인한 면제

[고] <예시> 인정 유학으로 자퇴 후 편입학한 경우

	2020년 02월 14일 ○○중학교 제3학년 졸업 2020년 03월 02일 □□고등학교 제1학년 입학(2021년 02월 15일 자퇴) 2022년 09월 01일 □□고등학교 제3학년 편입학
특기사항	2021.02.15. 가정 사정으로 자퇴

▶ 2022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 도움자료(75쪽)

(고등학교) 2022 학교생활기록부 점검표(예시)

②의 비교

- 2020~2021학년도: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실제 학교명이 표기된 경우 2021학년도의 예시를 참고하여 학교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정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발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유급, 수료, 출석일수



Q4

수업일수가 191일인 학교입니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못하면 유급이므로 128일 이상 출석해야 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1

출석인정 결석 14일, 질병결석 20일, 미인정결석 30일인 학생의 경우 유급 대상인가요?

사례2

질병 지각 30회, 미인정 조퇴 15회, 미인정결석 50일인 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 수료가 가능한가요?



A4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은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 질병·미인정·기타 결석은 모두 결석으로 계산하여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1

유급 대상이 아닙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질병결석 일수와 미인정결석 일수의 합이 50일로 128일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해당 학년 수료가 가능합니다.

사례2

수료 가능합니다. 지각·조퇴·결과는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석일수가 50일로 128일 이상 출석하였으므로 해당 학년 수료가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7쪽, 중 38쪽, 고 35쪽)

[초: 바., 중: 마., 고: 나.] 유급

1) 유급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해당 학년 교육과정을 미수료하여 상급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한 것으로 다음 학년도 1학기 시작일부터 다시 학업을 수행해야 한다.

가) 출석일수 부족은 당해 학교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말함.

〈예시〉 수업일수가 191일인 경우 191의 3분의 2는 127.33... 으로 계산되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28일 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년 말에 유급대상자로 선정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9쪽, 중 61쪽, 고 59쪽)

다. 지각·조퇴·결과

1) 지각·조퇴·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2) 기타 출결 관련 용어

-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임.
※ 교내에서 개근상·정근상 수상대상자의 수상 여부의 판단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 방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해당 학년 수료를 위한 출석일수 산정
 - 출석한 일수가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지각(또는 조퇴, 결과)은 횟수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4쪽, 중 66쪽, 고 64쪽)

[초]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중·고]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1

인적·특정사항
(공통)

2

출석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유예, 면제, 자퇴, 학적변동일, 학업중단, 서술형 입력 항목



Q5

사례1

유예, 면제, 자퇴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학생의 학적변동 당일(유예일, 면제일, 자퇴일 등)도 출결 처리해야 하나요?

사례2

학기 중에 유예,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을 작성해야 하나요?



A5

사례1

학적변동 당일까지 수업일수에 포함되므로 유예, 면제, 자퇴 등의 학적변동일도 출결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2

학생이 전출·휴학·면제·유예·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년 중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도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중학교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유학기활동상황'은 '(해당 사유)로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하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사유)로 특기사항 없음.'을 입력(중학교는 자유학기만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경우 '(해당 사유)로 관찰 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30쪽)

[초·중]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고]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9쪽, 중 78쪽, 고 81쪽)

1.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나.

[초] ※ 학업중단자(유예·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까지의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중] ※ 학업중단자(유예, 면제 등)의 경우 학업중단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고] ※ 자퇴·퇴학·제적·휴학의 경우 학적반영일을 기준으로 자율·동아리·진로활동의 누가기록과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입력함.



1

인적·특기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전출입, 도서벽지, 원격지



Q6

사례1

2월 15일에 종업식을 하는 A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학생이 2월 1일에 B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 하는데 B초등학교는 이미 1월 13일에 종업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출입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전출·전입 시 공백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타시도에서 제주도로 전입하는 것을 국내 원격지로 보고 1일의 공백을 인정하여 수업일수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1일 공백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A6

사례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전출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전출 처리하고, 전입교에서는 전입학 처리를 합니다. 전입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 상에서 진급 처리를 해 이미 학적반영이 완료되었을 경우, [학적]-[전입 관리]-[진급누락자관리] 메뉴를 통해 전입생에 대해서 상급학년으로 진급 처리를 진행합니다.

사례2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기준은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아울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236호)」의 별표에 도서·벽지의 예가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수업일수에서 제외하라는 것은 전출일이 4월 5일(화)인 경우, 전입일이 4월 7일(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제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7조(인적·학적사항)

- ③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 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표 7과 같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5쪽, 중 36쪽, 고 35쪽)

1. 제7조(인적·학적사항)

[초·중]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취학, 유예, 면제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고] 다.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전형, 전·편입학, 재입학, 휴학, 자퇴, 퇴학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1쪽, 중 42쪽, 고 40쪽)

다. 전출일과 전입일은 연중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한다.

【기재 방법】

-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국내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고, 국외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최대 3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생사항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 인적·학적사항(공통)



Keyword 위탁



Q7

본교는 2월 11일에 졸업식을 했는데 위탁기관은 2월 말까지 운영을 합니다. 본교 졸업식 이후에도 학생의 교육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7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위탁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정이 2월 말까지 운영되어 위탁학생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는 비록 원적 교에서 졸업식을 했더라도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8298호)

제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7쪽, 중 70쪽, 고 67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2 출결상황(공통)



Keyword 경조사, 출석인정 결석



Q8

사례1

조부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사망 전날에 결석했을 때도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한가요?

사례2

조부모가 목요일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대체공휴일)이 모두 휴일인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한 날은 언제인가요?



A8

사례1

가능합니다. 사망일을 포함하여 전후 연속 5일 이내라면 '출석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한 날은 사망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경조사 일수 5일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연속된 날짜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57쪽, 중 59쪽, 고 57쪽)

9)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처리 불가). 사망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처리할 수 있다.

1

인적·배경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업참여
상황(초·중·고)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2 출결상황(공통)



Keyword 장기결석



Q9

다음은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이 5일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사례1

한 학생이 질병 3일, 미인정 2일, 기타 2일을 연속해서 결석했는데, 이 경우 특기사항에 사유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감기 3일, 복통 2일로 연속해서 5일을 결석한 경우도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하나요?



A9

사례1

기타결석 2일에 대한 사유만 기재합니다. 기타결석은 1일이라도 사유를 기재하고, 질병과 미인정 결석은 각각 5일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유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2

장기결석 사유를 기재합니다. 감기와 복통의 경우 결석의 사유(질병명)는 다르지만 '질병 결석'이라는 결석의 종류는 동일하므로 합산하였을 때 5일 이상에 해당합니다. 특기사항에 '감기(3일), 복통(2일)' 또는 '감기 및 복통(5일)'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2~63쪽, 중 65쪽, 고 63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2 출결상황(공통)



Keyword 기타결석



Q10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의 주체가 학생인가요? 학부모가 조부모 간병을 위하여 학생이 결석을 해야 하는 상황(가족 중 돌봐 줄 사람이 없어 부모와 함께 조부모 댁 또는 병원이 있는 곳에서 생활 등)도 위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10

기타결석에 해당하는 부모 봉양, 간병 등의 부득이한 개인 사정은 학생이 주체이며, 부모가 학생의 조부모 간병을 하여 자녀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출석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및 근거를 종합·판단하여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에 따른 기타결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2. 결석

마.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인적·배경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업참여
상황 (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2 출결상황(공통)



Keyword 단기결석



Q11

사례1

'단기결석의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에 해당되는 기준 횟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례2

5회 이상의 단기결석에 대해 주된 결석 사유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하기로 결정한 학교에서, 질병으로 하루를 결석했을 경우 '복통(1일)'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3

5회 이상의 단기결석에 대해 주된 결석 사유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하기로 결정한 학교에서, 감기로 2일씩 총 3번 단기결석 했을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 입력 대상인가요?



A11

사례1

횟수가 많은 단기결석에 대해 주된 사유를 입력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 횟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2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례3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말씀하신 5회가 일수의 개념이 아닌 빈번한 단기결석의 횟수의 개념으로 정하였다면 입력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일수의 개념으로 정하셨다면 입력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2~63쪽, 중 65쪽, 고 63쪽)

③ 특기사항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4) 지각·조퇴·결과: 입력하지 않으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예시〉 감기로 인한 질병조퇴(13회), 부 간병으로 인한 기타조퇴(10회), 병원 정기진료로 인한 질병지각(15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1

인성·역지사정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업참여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2 출결상황(공통)



Keyword 전출입, 수료, 개근, 수업일수, 출석일수



Q12

사례1

전입학으로 인해 전출교와 전입교의 학사일정 차이로 수업일수가 190일에 미달할 경우 출결 특기사항의 기재 사항 및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례2

전출교에서 출석일수가 180일로 개근인 학생이 본교의 학사일정이 끝난 후 전입을 와서 전입교의 수업일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개근 입력이 가능한가요?



A12

사례1

학적을 통해 전출입사항이 확인되므로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산정은 190일 미만의 수업일수와 상관없이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학생이 출석한 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됩니다.

사례2

'개근'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이므로 수업일수와 관계없이 '개근'의 입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9쪽, 중 42쪽, 고 40쪽)

[초] 1) 전입학으로 처리하는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중·고] 나. 전입학의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 학년을 수료할 수 있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64쪽, 중 66쪽, 고 64쪽)

[초·중]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취학(상위학년으로 중도 재취학 제외)의 경우는 재취학 이전과 재취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한다.

[고] 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란에 '개근'으로 입력한다.

2)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의 입력여부를 결정함.

3 수상경력(중·고)



Keyword 교외상, 교내상, 수상대장



Q13

교외상 실적을 바탕으로 공로상, 체육상, 기능상, 예능상 등 교내상으로 시상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기재할 수 있나요? 즉, 교외상이 교내상의 수여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13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교외상 실적 등을 근거로 한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파.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 ‘수상경력’ 이외 항목 입력 불가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1쪽, 고 68쪽)

1. 제9조(수상경력)

나. 모든 교외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교육정보시스템의 교외상 수상대장 입력 여부는 학교장이 정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각종 교외상 관련 대회 참가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6쪽, 고 73쪽)

유의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에서 금지하는 실적을 근거로 한 수상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Keyword 자격증, 취득연월일



Q14

2022학년도 1학년 학생의 자격증 시험 합격일은 2022년 2월 24일이고, 자격증 발급일은 3월 14일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입력 가능한가요?



A14

자격증의 취득연월일은 자격증 발급일이 아닌 자격증 합격일(등록일)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따라서 입학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 ① 고등학생이 재학중에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6쪽)

㉓ 취득연월일

- 가. 자격증의 취득연월일은 자격증 합격일(등록일)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업참여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실의적
취업활동상황
(공통)

6

교과 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



Keyword 위탁, 자격증, 정정



Q15

사례1

위탁기관의 자료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자격증 취득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사례2

이전 학년도에 입력이 누락된 자격증은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가기록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전 학년도에 기재된 자격증에 오류 사항이 있을 때도 정정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누가기록을 수정할 수 있나요?



A15

사례1

입력 불가입니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 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을 기재할 수 없으므로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라 할지라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2

이전 학년도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대한 변경(수정, 삭제)은 정정대장을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정정합니다. 하지만 이전 학년도에 취득하였으나 누락된 자격증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정대장 작성 없이 누가하여 기록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67쪽)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9쪽)

유의사항

-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며, 기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현황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참고자료 2] 참조).
- 자격증의 명칭 및 취득 사실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만 입력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누가하여 기록함(이전 학년도 취득한 자격증도 학생부 정정 불필요).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업능력
평가(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학업성
적관리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자율활동, 스포츠 리그, 행사활동



Q16

사례1

자율활동 시간에 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활동(관련 진로 교육 활동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해당 교육 활동을 기재해야 하는지? 진로가 해당 교육 활동과 밀접한 학생만 자율활동이 아닌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재학생 중 신청자에 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또는 진로)으로 방과후 체험프로그램을 주 1회 2시간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교교육계획으로 승인된 내용이면 정규교육활동 시간 외에 진행된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 기재해도 되나요?

사례3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급 대항 스포츠 리그전을 운영하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친구들의 활동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을까요?



A16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 활동을 기재하는 경우 학교교육계획 등에서 편성·계획한 영역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1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시간으로 편성·운영하였으므로 '진로활동 특기사항'이 아닌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사례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3

스포츠 리그전 등이 연간 시상 계획에 따른 '대회' 또는 '행사'이거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특기사항 기재가 불가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1쪽, 중 80쪽, 고 83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2) 타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초: [참고자료 4], 중·고: [참고자료 5])를 참조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2쪽, 고 85쪽)

2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활동 내용은 누가 기록하여 관리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6쪽, 중 124쪽, 고 134쪽)

유의사항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지역별 및
인종·민족사항
(초·중·고)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임원, 재임기간



Q17

사례1

본교는 학생회장 임기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인데 학생회장 임원 입력을 2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3학년 담임이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례2

3월 4일에 전입(재취학 등의 학적변동)한 2학년 학생이 임원으로 당선된 경우 임원 재임기간은 3월 1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 4일부터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17

사례1

임원 재임기간을 각 학년별로 나누어 해당 학년의 학급담임교사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사례2

3월 4일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전입, 재취학, 편입학 등의 학적변동 학생의 재임기간은 학적 반영일부터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73쪽, 중 83쪽, 고 86쪽)

[초] 3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5학년 2학기 및 6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중·고] 4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기재 방법]

- 학교 사정에 따라 임원의 활동기간이 학기 또는 학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등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활동기간을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임원이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제 종료일까지를 재임기간으로 입력함.
- 학기 중, 임원의 학적변동 등으로 재선출하는 경우 신임 임원 재임기간의 시작일은 재선출일을 입력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1학년 2학기 및 2학년 1학기과 같이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 학년의 자율활동 영역에 나누어 임원 재임기간을 입력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을 얻
은 경험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고)

6

고급기술
활동상황
(중·고)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임원, 재임기간, 대입전형자료



Q18

고 3학생의 경우 2학기에 대입전형자료 생성 시 학급회 임원의 재임기간을 대입전형 마감일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재임기간을 졸업일을 기준으로 미리 입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18

대입전형자료 생성 기준일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2학기 학급회 임원의 재임기간은 해당 학교의 2학기 시작일과 수시 대입전형 자료 생성 기준일(2학기 시작일-2022.08.31.)로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2.08.31.은 추후에 정시 대입전형 자료 생성 기준일 및 졸업일로 각각 수정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3학년도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제공 계획(교육부 교육정보화과-3393(2022.5.18.))

⑥ 자료 생성 및 제공 시기

수시: 자료 생성 기준일 2022.08.31.(수)

정시: 자료 생성 기준일 2022.11.30.(수)





1

인지·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용·학회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술
발표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순회교육, 위탁, 장기결석, 이수시간



Q19

사례1

순회교육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하지 못해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2

학기 초 위탁학생으로 등록되어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에 기재할 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영역 특기사항에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사례3

장기결석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19

사례1,2

순회교육이나 위탁교육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입력하나 순회교육이나 위탁교육기관의 내용이 없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과 같이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사례3

창의적 체험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수시간은 0시간이며, 장기결석 등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과 같이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2쪽, 고 85쪽)

2 시간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간을 입력한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단,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2쪽, 고 85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2쪽, 고 85쪽)

[초] ※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중·고]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을 및
인용 기록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교육관련기관, 공동 주최·주관



Q20

OO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정보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관한 온라인 행사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나요?



A20

OO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연구정보원 모두 교육관련기관 또는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에 포함된다면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OO교과교육연구회'가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단체라면 학교장이 승인하였더라도 행사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초등 [참고자료4], 중·고등 [참고자료5]를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은 소속 시·도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1쪽, 중 80쪽, 고 83쪽)

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특기사항은 활동 장소가 국내일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력할 수 있다.

- 1)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 2) 타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3)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중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

※ 복수의 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활동은 모든 기관이 교육관련기관 또는 (초: 초등학교, 중: 중학교, 고: 고등학교)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승인한 체험활동만 기재 가능함.

※ 교육관련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현황은 초등 [참고자료4], 중·고등 [참고자료5]를 참조함.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차별종 및
특수 지원사항
(중·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진로활동, 진로희망, 진로희망분야



Q21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지 않은 영역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진로활동이 편성되지 않았어도 특기사항에 진로희망은 기재해야 하나요?



A21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진로활동 특기사항 및 희망분야를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입력해야하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 ⑥ 제2항 및 제3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는 진로희망분야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2쪽, 고 85쪽)

[초] ② 특기사항

- ※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중·고] ③ 특기사항

-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6쪽, 고 89쪽)

⑥ 진로활동

- 가.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6쪽, 고 89쪽)

[초] ⑤ 진로활동 가. [중·고] ⑥ 진로활동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용·추천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담당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진로활동, 진로탐색활동, 진출입



Q22

사례1

1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은 미편성되어 있고,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은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출생 학교생활기록부 전송 시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도 기재해야 하나요?

사례2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담임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학생의 진로특성을 자유학기활동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에 입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특기사항은 공란으로 두어도 될까요?

사례3

교육청 주최·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활동한 내용을 진로활동에 입력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2, 3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 기재하면 되는데 1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이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진로탐색활동 영역에 기재하면 될까요?



A22

사례1,2,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입력합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을 편성하지 않았더라도 전출 시에는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 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 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학교생활기록부 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입력·관리 방법' 을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는바, 전산입력 방법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함.

차. 전출입 시 자료 송부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전출 시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확인 후 전입교로 전송한다. 이 때,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자료의 전송 방법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2쪽)

③ 특기사항

라.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지역을 넘
친을 위한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담당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진로활동



Q23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학교교육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독서 활동, 개인적 진로탐색활동 같은 경우입니다.



A23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이나 진로상담을 한 결과 등도 입력할 수 있으므로 교육계획서에 없는 내용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여야 하며, 기재요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 한다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아래 사례로 한정함.

① 동료평가서, ② 자기평가서, ③ 수업산출물(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④ 소감문, ⑤ 독후감

- 사용자는 학생부 내 서술형 항목 입력을 위해 학생·학부모 등에게 상기 ①~⑤의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6쪽, 고 89쪽)

[초] ⑤ 진로활동 가. [중·고] ⑥ 진로활동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희망분야, 진로희망



Q24

진로활동의 희망분야란에 진로희망을 2개 이상 입력해도 되나요?



A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진로희망 입력 개수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의 진로 희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6쪽, 고 89쪽)

⑥ 진로활동

가. 학생의 진로희망(희망분야 또는 희망직업)은 '특기사항' 내의 '희망분야'란에 입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는다.

※ 관심 분야나 희망 직업은 커리어넷(www.career.go.kr) 직업정보의 직업분류를 참고함.

※ 기재 누락과 구분하기 위해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입력함.

〈예시〉 '진로탐색 중임.', '현재 진로희망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졸업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지역별 및
인종·국적·성별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진로활동, 입력 주체



Q25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처리요령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의 입력 주체가 학급담임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입력 주체에 대한 해석이 어떤 의미일까요? '타 교사가 활동하고, 학급담임교사가 타 교사로부터 활동 결과를 받아 입력한다' 또는 '학급담임교사가 활동 및 입력한다'인가요?



A25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기에 당해 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명시된 담당교사가 진로활동을 진행하고 그 활동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진로활동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주체인 학급담임교사는 진로활동을 진행하는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참고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5쪽, 중 86쪽, 고 89쪽)

[초] ⑤ 진로활동 가. [중·고] ⑥ 진로활동 나.

진로활동 영역의 '특기사항' 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 1) 특기·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활동
- 2) 학생의 특기·진로를 돕기 위해 학교와 학생이 수행한 활동과 결과
- 3) 학생·학부모와 진로상담을 한 결과
- 4) 학생의 활동 참여도, 활동 의욕, 태도의 변화 등 진로활동과 관련된 사항
- 5) 학급담임교사, 상담교사, 교과담당교사, 진로전담교사의 상담 및 관찰·평가 내용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청소년단체활동, 동아리활동, 동아리명, 단체명



Q26

청소년단체인 RCY가 정규교육과정 내 창체 동아리활동의 부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럼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인 경우 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또 동아리활동의 특기사항도 입력할 수 있나요?



A26

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단체명을 동아리명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0쪽)

마. 학교 밖 청소년단체 활동은 기재하지 않으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청소년단체 활동은 '청소년단체명'만 기재한다. 단, 정규동아리로 편성된 경우는 단체명,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81쪽, 고 84쪽)

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시수 인정과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은 표와 같다.

영역	시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
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 시수 (정규교육과정 이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포함)	[중]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및 청소년단체활동 포함) [고] ■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정규교육과정 내 청소년단체활동 포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졸업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용·추천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동아리활동, 임원, 전출입



Q27

전입생의 창의적체험활동 중 동아리활동 임원의 임원 사실 및 재임기간이 누락되어 전출교에 문의하니 전출교에서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아리활동의 임원은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A27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특기사항란에는 자치활동 임원을 입력할 수 있고, 임원을 입력할 때에는 재임기간을 반드시 병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임원의 경우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73쪽, 중 83쪽, 고 86쪽)

[초] ③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5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6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한다.

〈예시〉 3학년: 1학기 학급 부회장(2022.03.01.-2022.08.16.)

〈예시〉 6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2.03.01.-2023.02.10.)

④ 동아리활동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중·고] ④ 자율활동

다. 자치활동 관련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임원의 재임기간은 1학년은 입학일부터 학년 말, 2학년은 3월 1일부터 학년 말, 3학년은 3월 1일부터 졸업일까지로 입력한다.

※ 학기 단위로 임명하는 경우의 임원의 재임기간은 학기 시작일부터 학기 종료일까지로 입력함.

라. 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특기사항에 입력할 때에는 구체적인 임원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전교', '학년', '학급' 등을 입력하고, 재임기간을 ()안에 병기한다.

〈예시〉 1학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부회장(2022.03.02.-2022.08.15.)

〈예시〉 3학년: 전교 학생자치회 회장(2022.03.01.-2023.02.10.)

⑤ 동아리활동

가. 동아리활동 영역은 자기 평가, 학생상호 평가, 교사 관찰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특별한 활동실적 등을 참고하여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방송부, 도서부



Q28

사례1

학교 동아리 중 방송부, 도서부 학생이 점심시간, 저녁시간, 각종 학교 행사시간에 실시한 활동에 대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여 기록할 수 있나요?

사례2

국어 사랑 동아리에서 등교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주말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고운 말 사용하기' 캠페인활동을 진행하고 행사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이 경우 캠페인을 진행한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사례3

동아리활동으로 아이들이 직접 물품을 제작한 후, 지역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기부를 했다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28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또한 정규교육과정 동아리활동 시간이 아니더라도 동아리활동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8쪽, 고 90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지역을 일
한을 기록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동아리활동, 기부



Q29

동아리활동으로 도서를 기부 받아 바자회를 연 후 수익금을 후원사업에 후원하거나 대서관에 기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동아리활동 특기사항에 기부 및 후원 사실을 입력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29

도서를 단순 기부하거나 현금을 단순히 기부한 것이라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가 아닌,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도서를 기부 받아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기부 및 후원 등의 유의미한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면, 그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실제적인 활동과 역할 위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7쪽, 고 90쪽)

나.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1

인지·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용·특적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활동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중복 기재



Q30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점심 시간에 진행되는 학생 멘토링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 멘토링 활동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도 기재할 수 있나요?

사례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체육한마당, 과학축제 등을 자율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내 봉사활동 운영계획에 체육한마당, 과학축제를 위해 행사 전·후 도우미 활동을 계획한 경우 자율활동 특기사항과 봉사활동 실적에 중복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3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으로 전시회 꾸미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한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록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도 기록이 가능한가요?



A30

사례1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학교교육계획 등에서 편성·계획한 한 개의 영역으로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으로 계획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내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사례2

자율활동 시간 전·후에 도우미 활동을 한 경우 도우미 활동 관련 내용은 자율활동 특기사항에는 기재하지 않고 봉사활동 실적에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례3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8쪽, 고 90쪽)

바.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6쪽, 중 124쪽, 고 134쪽)

유의사항

◦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학생의 특기사항은 필요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 가능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용·추천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임원활동, 봉사활동



Q31

학생회 임원활동의 일환으로 방과후 학교 행사에서 심판 및 진행 도우미 활동을 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한가요?



A31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도우미 활동이 학생회 임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기회라면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율활동 특기사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80쪽, 중 91쪽, 고 93쪽)

유의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차이점 및
인물·이력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습
활동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도우미 활동, 헌혈, 주관기관명, 봉사활동계획 주체



Q32

사례1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급별로 구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개인'과 '학교'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점심시간 급식 도우미 활동이나 방과후 도서실 도우미 활동 등을 진행하였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봉사활동 영역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학교)'로 입력해야 하는지 '(개인)'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3

학교 내부결재를 통해 고등학교로 헌혈차가 와서 단체로 헌혈을 진행한 경우,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학교와 개인의 구분을 어떻게 입력하나요?



A32

사례1,2,3

'(학교)'로 입력합니다.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하므로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 '(학교)'로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7쪽, 고 89~90쪽)

7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학교교육계획(정규교육과정 포함)에 따라 시행되는 봉사활동은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 '(학교)'로 입력함(위탁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위탁기관명'으로 입력함).

※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이 아닌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란에 '(개인)'으로 관련사항을 입력함.

-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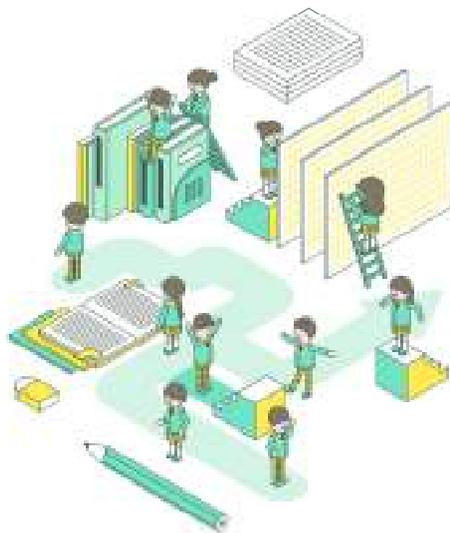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 동아리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90쪽, 고 92쪽)

〈예시〉 봉사활동 실적 작성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022.04.15.	(학교)○○동주민센터	공원 청소	3	26
	2022.06.08.	(학교)대한적십자사○○혈액원	헌혈	4	57
	2022.12.01. - 2022.12.30.	(학교)○○학교	급식 도우미 활동	7	91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을 얻
은 자격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내용, 기관명



Q33

학교생활기록부 점검 중 봉사활동 실적 영역의 '활동내용'에 'OO외국인센터 안내 도우미'라고 주관기관명을 포함하여 기재가 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1365 자원봉사포털(나눔포털)의 봉사실적 연계를 통해 입력된 자료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이 포함된 활동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해야 하나요?



A33

네,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봉사활동 실적의 '활동 내용'에 기관명 등 기재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단,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 [참고자료 4], 중·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7쪽, 고 89~90쪽)

1.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2)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란의 '학교' 또는 '개인'의 구분은 봉사활동계획 주체에 따라 입력한다.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3) '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의 입력은 불가함.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내용, 도우미 활동, 대회



Q34

사례1

시상계획이 있는 교내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운영 도우미로만 활동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할 수 있나요? 입력이 가능하면 '대회' 용어를 포함하여 '대회 운영 도우미'로 입력하면 되나요?

사례2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교외 봉사활동 실적 중 활동 내용에 '마라톤 대회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대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대회 진행을 지원한 운영 도우미로 활동한 경우에도 대회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A3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 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 없으나, 대회나 행사의 진행, 보조 등 순수한 봉사활동으로 운영 도우미로만 활동한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란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대회' 용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1쪽, 고 68쪽)

다.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하며, 수상경력 이외의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자유학기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 시상 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수상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대회' 라는 용어는 수상경력을 제외한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7쪽, 고 89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1)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만 입력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을 및
인용 기록사항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학급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기간, 도우미 활동



Q35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내 급식 도우미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기간을 학년도 단위(3월 1일~2월 28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학생들의 교내 급식 도우미 활동기간은 종업식(2월 초)까지입니다. 봉사활동 기간을 입력할 때 실제 활동 기간을 입력해야 하는지, 계획에 따라 2월 28일까지로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35

실제 활동 기간을 입력합니다. 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할 때에는 계획된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하므로 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활동 기간 및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에 실제 활동한 기간 및 시간을 기록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실적에 봉사활동 확인서에 명시된 기간 및 시간을 입력합니다. 아울러, 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시·도교육청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8쪽, 고 81쪽)

다.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학교·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6쪽, 중 87쪽, 고 89쪽)

⑦ 봉사활동 실적

가. 봉사활동 실적에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시간



Q36

6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 학생이 4교시까지 수업을 받고 5, 6교시는 출석인정 조퇴를 하였습니다. 이 날 학생이 4시간의 개인 봉사활동(헌혈 아님)을 하였습니다. 4시간 모두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36

가능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시간은 평일의 경우 수업시간과 봉사활동 시간을 합쳐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합니다. 출석인정 조퇴를 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당일 수업시간이 6교시라면, 해당 학생의 조퇴 여부와 관계 없이 2시간까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88쪽, 고 90쪽)

마.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지역을 넘
어온 창의적
체험활동
(간접적)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담당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공통)



Keyword 봉사활동 시간



Q37

학생이 23일과 27일 양일간 2시간 30분씩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봉사활동 실적에 시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A37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3일과 27일에 진행한 봉사활동이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했다면 봉사활동 시간은 5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3일과 27일 모두 30분씩 절사하여 각각 2시간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7쪽, 중 87~88쪽, 고 90쪽)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 말 또는 학년 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마.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한다.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휴업일(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인 경우 8시간 이내로 인정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 등 학교장 출석인정 결석 기간의 봉사활동은 당일 수업시수와 봉사활동 시간을 합하여 8시간 이내로 함.

〈예시〉 교외체험학습일에 봉사활동 8시간을 한 경우 봉사활동 당일 학교 수업이 7시간이면 봉사활동은 1시간만 인정함.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독후활동, 도서명, 저자명, 특수문자, 상호명



Q38

사례1

교과 시간에 교과 관련 독서 활동을 하고, 그 내용을 해당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이때 독서활동상황 이외의 영역에 도서명을 입력할 때 도서명만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독서활동상황에 입력하는 형식처럼 '도서명(저자)'과 같이 저자명을 함께 입력해야 하나요?

사례2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독서활동상황 외 다른 영역에 기재할 때 도서명 또는 저자명에 포함된 특수문자나 상호명 등을 그대로 기재해도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인 상호명, 기관명은 OO처리해야 하나요?



A38

사례1

해당 영역에서의 활동이 단순 독후활동이 아니라면 '도서명' 또는 '도서명(저자)'과 같이 도서명을 포함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활동상황 이외에 도서명을 입력할 때 저자명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닙니다.

사례2

도서명과 저자명은 표기 그대로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2쪽, 중 120쪽, 고 130쪽)

[초]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중·고] 독서활동상황

유의사항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독후활동, 도서 중복 기재



Q39

수학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한 A 도서의 도서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서가 과학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 내용과 함께 도서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서명을 여러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또는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에 중복해서 입력해도 되나요?



A39

기재 근거가 다르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상황은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영역에서 도서명을 언급하는 경우는 단순 독후활동 외의 활동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교과의 성취기준에 맞는 교육활동이나 해당 영역에 맞는 활동으로 단순 독후활동 외 교육활동을 하였다면 여러 교과 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등에 중복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독서활동상황'란에는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2쪽, 중 120쪽, 고 130쪽)

[초] 교과학습발달상황

유의사항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중·고] 독서활동상황

유의사항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전출입, 교과세특



Q40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1학기 및 2학기에 모두 편성된 동일 과목에 한해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2학기에 입력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 전출생의 경우,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서 보내야 하나요?



A40

원적교에서는 전출생에 대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며, 전입교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고 30쪽)

[초]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고]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0쪽, 고 116쪽)

[초] 3)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평가 결과,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고] 4) 학생이 전출할 때에는 본 훈령 제4조제5항 및 그 해설에 따라 전출일자까지 원적교에서 입력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입력하여 전송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자료(성적, 월별 출결상황, 기타 입력사항 등)는 정리하여 전입교로 송부하여야 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전출입, 교과세특



Q41

학기 중간에 본교로 전입 온 학생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입력된 과목 중 일부는 전입교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교에서 전출교의 내용을 삭제해도 되는지요? 또 일부 과목은 글자수 초과 등으로 전입교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41

전출교에서 입력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반영여부(일부만 반영, 삭제 등 포함)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4조(처리요령)

- ⑤ 학생이 전·편입학,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 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전·편입학, 재취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90쪽, 중 106쪽, 고 116쪽)

[초] 4) 재취학, 전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재취학 및 전입학 등 이전에 실시한 평가 결과 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중·고] 5) (중: 재취학, 고: 재입학), 전입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자의 동일(유사) 과목 성적인정과 반영 방법은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위탁, 평가, 결석



Q42

성적 미산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본교 평가 시행일에 출석하지 않고 위탁기관으로 출석했습니다. 평가 시행일의 출결처리 및 성적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42

특별한 사유 없이 재적교 평가에 미응시하면 '미인정결석' 처리합니다. 해당 학생에 대한 성적 산출 시 인정점 처리 등은 귀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단, 건강장애 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원격수업의 경우 미응시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4쪽, 고 111쪽)

[중: 라), 고: 타) 위탁학생 성적처리 방식

(1) 위탁학생이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을 취득한 경우, 위탁교(기관)의 성적을 인정하고,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때, 위탁교(기관)에서 보내온 성적은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여 입력한다. 다만, 성적(성취도, 원점수, 과목평균, (고: 표준편차, 석차등급) 등)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에 문장으로 이수 내용만을 입력한다.

(가) 위탁학생이 학기말 성적 처리 이전 복교하는 경우, 재적교 성적산출에 포함하며, 자체 평가 실시 및 성적 처리가 불가능한 위탁교(기관)에 위탁된 학생은 재적교 평가에 응시한다(미응시 시 처리 방법은 [참고자료 기] '위탁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등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의 수강학생 처리' 참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71쪽, 고 181쪽)

종 류	소년보호기관	위탁학생 (대안학교 등)	건강장애학생 및 3개월 이상 외상적 부상 학생의 병원학교, 원격수업
성적 (지필평가/ 수행평가)	<성적미산출 소년보호기관> • 소년보호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 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 (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성적미산출 위탁교(기관)> • 위탁교(기관)에서 성적이 미산출되는 경우 재적교 평가에 응시함(미응시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소속교 평가에 응시함(소속교성적산출에 포함). • 소속교 평가 미응시의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공통)



Keyword 수업량 유연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Q43

사례1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을 기재하려면 사전에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실시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서에 넣어야 하나요?

사례2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을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할 때 그 수업을 듣는 학생 모두 입력해 줘야 하나요?

사례3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기사항에 기재해도 되나요?



A43

사례1

학교는 수업량 유연화와 관련된 계획 및 운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시·도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16(교과수업)+1(자율적 교육활동))로 편제되어 수업량 유연화로 운영하였으며,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가 가능합니다.

사례2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함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3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관련 내용은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9쪽)

마.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 내용은 해당 영역에만 입력한다.

※ 입력 글자 수 초과를 이유로 특정 영역의 내용을 타 영역에 입력하지 않음.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124쪽)

마.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 목	내 용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바.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내용 입력 방식

1)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19-211호)」,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6170, '19.11.25.)에 따라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 활동' 관련 내용을 해당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 입력여부는 교육적 유의미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판단하고, 관련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에 중복 기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가)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교과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나)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이 특정 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7 자유학기활동상황(중)



Keyword 자유학기활동 미참여



Q44

사례1

특수학급 학생 중 주제선택활동과 예술·체육활동 모두 배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시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학생의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특정 요일마다 조퇴하여 진로탐색활동에 한 시간도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특기사항에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A44

사례1

자유학기활동 내용(프로그램)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 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자유학기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수시간은 0시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기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기재예시를 참조하여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례2

진로탐색활동에 1시간도 참여하지 못하여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해야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있는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으므로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을 참고하여 '반복적인 조퇴로 활동 내용이 없음.', '정기적인 조퇴로 활동 내용이 없음.' 등 학교에서 적절한 문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20쪽)

7.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6~117쪽)

2 시간

나. 자유학기활동 내용(프로그램)별 이수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한 학년·학급단위의 활동시간을 기준으로, 본인이 실제로 참여하여 이수한 시수를 입력한다.

※ 어떠한 사유(경조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출석인정·질병·미인정·기타결석, 조퇴 등을 구분하지 않음)로든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함.

3 특기사항

가. 자유학기활동상황의 영역별 특기사항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활동 내용, 참여도, 흥미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생의 활동 과정 및 참여 태도, 활동 후 성장 정도 등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입력한다.

나. 자유학기활동상황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단, 순회교육,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그대로 입력 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고급기술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고교)

8

특기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7 자유학기활동상황(중)



Keyword 전출입, 자유학기활동, 교과세특



Q45

자유학기를 운영 중인 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3월 24일자로 전출을 갑니다. 출석인정결석 등으로 실제 수업은 1~2시간 정도 참여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1~2시간만 참여한 경우 모든 자유학기 활동상황과 교과 세특을 과목별로 조금씩이라도 적어서 전출을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빈칸으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A45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자유학기 교과 수업 또는 자유학기 영역별 활동 등에 1시간이라도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입력해야 하고 이수시간이 0시간인 경우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30쪽)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 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4쪽)

다)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1)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의 '성취도(수강자수)'란에 'P'로 입력하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에 'P'로 입력한다.

※ '원점수/과목평균' 란은 공란으로 둠.

※ 자유학기 전출·입 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처리는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 요령]의 내용을 준수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8쪽)

②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입력대상 범위는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1) 자유학기에 이수한 모든 과목(교양 과목 포함)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가)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다) 자유학기 교과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원격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입력함.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8쪽)

가. 자유학기 전출·입 시 처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전출 시 자유학기활동에 전출일까지의 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송한다.

2) 자유학기의 자유학기활동상황은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기재 방법]

○ [전출교-자유학기 시행, 전입교-자유학기 시행]

①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입교에 전송한다.

※ 전출교에서는 영역별 입력가능 최대 글자 수와 전입교의 입력상황을 고려하여 활동내용을 입력함.

②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서 입력한 전입생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인정하고 전입 이후 전입교에서 이수한 자유학기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추가하여 입력한다.

○ [전출교-자유학기 시행, 전입교-자유학기 미시행]

① 전출교는 전출일까지의 자유학기활동 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입력하여 전입교에 전송한다.

② 전입교에서는 전출교에서 입력한 전입생의 자유학기활동 내용(이수시간과 특기사항)을 확인한다.

③ 전입교가 성적처리(기말고사, 2차 지필평가 등) 전일 경우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고·고)

8

특기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8 독서활동상황(중·고)



Keyword 전자책, 오디오북, ISBN



Q46

전자도서관 책(전자책 또는 오디오북)으로 독후감을 작성하여 제출했을 경우, '독서활동상황'에 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46

'전자책'과 '오디오북'이 ISBN에 등재되어 있고, 학생이 관련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등)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교과담당교사 또는 학급담당교사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120쪽, 고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8 독서활동상황(중·고)



Keyword 단편, ISBN



Q47

독서활동상황에서 학생이 '2021년 □□ 수상작품집'에서 A작가의 작품 「□□□」만 읽었으나, 이 작품은 단독 단행본으로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처럼 학생이 전체 작품을 읽은 것은 아니고 그 속에 포함된 단편 소설만을 읽었을 경우, 도서명이 아닌 '작품명(저자)' 형식으로 기재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47

ISBN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명(저자)'은 '독서활동상황'란에 기재할 수 없습니다. ISBN에 등재된 도서를 읽고 제출한 독서기록장 등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인 경우에만 기재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120쪽, 고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②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직무역량
활동상황
(중·고)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활동기록 및
품단관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8 독서활동상황(중·고)



Keyword 저자명, 작자미상



Q48

‘춘향전’의 경우 저자가 ‘작자미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대로 써야 할까요? 아니면 저자가 있는 동일명의 다른 책으로 바꾸어 써야 할까요?



A48

구전소설과 같이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도서의 경우 ISBN에 저자가 ‘작자미상’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실제로 읽은 책이 아닌 다른 저자의 책을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19~120쪽, 고 129~130쪽)

표준 가이드라인

- 독서 과정의 관찰·확인이 어려운 독서 성향 등은 기재하지 않고,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만 기재하여 독서활동 기록의 신뢰도를 제고함.
 - ※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함(정기간행물은 입력 불가).
 - ※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음.

② 독서활동상황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8 독서활동상황(중·고)



Keyword 독후활동, 도서 중복 기재



Q49

사례1

진로활동 시간에 진로연계 독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단순 독후감 쓰기가 아닌 본인 진로탐색활동을 겸하여 탐구 보고서 쓰기를 함께 진행하였다면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에 기록하고, 독서활동 상황에도 도서명 입력이 가능한가요?

사례2

과학 독서동아리에서 독서 이후 서평 나누기, 독서퀴즈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읽은 도서에 대한 기록을 동아리활동 특기사항과 독서활동상황에 모두 기록해도 되나요?



A49

사례1,2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증빙자료(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등)를 근거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이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상황'란에는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20쪽, 고 130쪽)

유의사항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전체 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음.

1
인적·학적사항
(공동)

2
졸업상황
(공동)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동)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동)

7
직무역량
발달상황
(중·고)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활동기록 및
종합평가
(공동)

10
정정사항
(공동)

11
기타사항 등
(공동)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공통)



Keyword 학업중단, 장기결석



Q50

장기결석으로 인해 출석일수가 0일인 학생이 휴학(유예 등의 학업중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의 입력 예시로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이라는 문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해서는 해당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란과 유사하게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이 없음.'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5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휴학(유예 등의 학업중단)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출석일수가 0일인 학생으로 모든 항목의 입력 자료가 없는 경우(교사의 관찰·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입력 방법을 참고하여 '장기결석으로 관찰 내용이 없음.'과 같이 입력 가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쪽, 중 30쪽, 고 30쪽)

[초·중] 자.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을 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초: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중: 자유학기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고] 자. 학생이 전출·휴학·제적·자퇴·퇴학할 경우에도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과 행동특성 누가기록 관련 사항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른다.

※ '각종 자료'라 함은 학적 특기사항, 출결상황,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누가기록 포함),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누가기록 포함) 등을 말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72쪽, 중 82쪽, 고 85쪽)

다. 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시간인 학생에 대해서는 <예시>와 같이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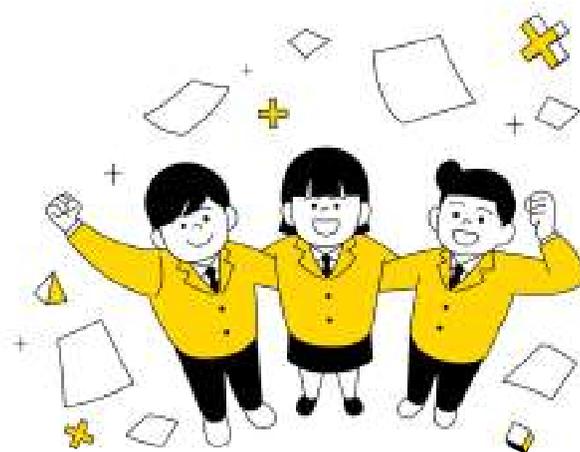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108쪽, 고 123쪽)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예시> 순회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순회교육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장기결석생인 경우: 장기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예시> 위탁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양호육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정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0 정정사항(공통)



Keyword 중복기간 자료 삭제, 학폭 조치사항



Q51

2021년 7월 16일 유예 후 2022년 3월 2일자로 재취학한 학생의 중복기간(2021.3.2.~2021.7.16.)에 해당하는 2021학년도 자료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해당 학생의 2021학년도 출결상황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때, 중복기간인 2021학년도의 출결상황을 삭제하는 경우 출결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도 일괄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괄 삭제되는 경우, 출결상황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종합의견에 있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은 정정 이후에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A5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통하여 중복기간의 자료 삭제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정정대장 관리]-[정정대장작성] 중 {출결상황탭에서 {학년자료삭제}를 수행하면 선택된 학년도의 출결자료에 속해 있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봉사활동실적 제외), 진로희망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료가 일괄 삭제됩니다. 따라서 재취학에 따른 중복기간의 자료 삭제 전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출력하고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하며, 중복기간 자료 삭제 후 해당 학생의 전년도 자료 중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 삭제 불가 내용을 현재 학년도 각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41~42쪽, 중 43쪽, 고 41쪽)

[초] 라., [중] 마. 재취학·편입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1) 재취학·편입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취학·편입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취학·편입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취학·편입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재취학·편입학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고] 마. 재입학·편입학·복학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1) 재입학·편입학·복학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입력할 때는 학년이력, 인적·학적사항,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외한 항목(수업일수, 출결상황, 성적, 기타 비교과 영역 등 제반 내용)에 대하여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전의 내용은 학업중단 시의 내용으로, 재입학·편입학·복학일 이후의 내용은 재입학·편입학·복학 후 새로 수행하는 사항을 입력한다.

※ 재입학·편입학·복학 등에 따라 학생의 중복기간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삭제 전 출력물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10 정정사항(공통)



Keyword 전출입, 정정, 증빙자료



Q52

전출생의 이전 학년도 동아리 특기사항이 누락되어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해당 학년도 누가기록이라도 찾아서 보내면 정정할 수 있을까요?



A52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누가기록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증빙자료의 객관성 심의를 포함한 정정의 여부는 전입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1쪽, 중 32쪽, 고 31쪽)

유의사항

-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처리함.
※ 전출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음.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3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칭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방학숙업 및
봉사활동
(공통)

10
참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0 정정사항(공통)



Keyword 정정, 정정 주체, 증빙자료



Q53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점검하다가 이전 학년도 진로활동 특기사항의 내용에 학생과 관련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기재를 잘못된 작년 담임선생님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이 정정해도 될까요?

관련된 내용에 대한 내부 결재 문서가 없는데,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정정이 가능할까요?

삭제와 추가 기재 중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A5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정 주체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은 현재 학년도 학생의 학급담임교사만 가능합니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빙자료의 기준은 2가지로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대한 심의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해당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해야 하며, 정정에 활용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종류와 정정이 가능한 범위 등에 대해서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19조(자료의 정정)

-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며, 학년도 종료 시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종료하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별표 10(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 가.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7조의 학생정보란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표 10의 1조)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 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처리를 하며, 졸업생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정정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3쪽, 중 131쪽, 고 142쪽)

1. 제19조(자료의 정정)

- 가.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인적·학적사항의 '학생정보'의 정정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증빙자료만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1) 객관적 증빙자료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해당 증빙자료가 해당 학년도에 작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해당 증빙자료가 훈령과 지침(기재요령)에 명시된 항목별 입력 주체가 작성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인적·학적사항
(공동)

2

출결상황
(공동)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동)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동)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활동기록 및
품행지표
(공동)

10

참정사항
(공동)

11

기타사항 등
(공동)

10 정정사항(공통)



Keyword 정정, 학업중단,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Q5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조치사항을 출결 특기사항에 기재하였는데, 해당 학생이 자퇴(유예 등의 학업중단)를 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언제 삭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5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제17조제1항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일로부터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계속 학업중단 상태인 경우 졸업 직전에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심의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학업중단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절차에 따라 삭제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40쪽, 중 172쪽, 고 182쪽)

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별 기재 영역 삭제 시기

-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2019학년도까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의미한다. 이하 같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삭제 시기는 표와 같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학교생활기록부 영역	삭제 시기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과 동시(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 사이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할 시점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제4호(사회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학업중단자는 해당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대상 아님
제9호(퇴학처분)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41쪽, 중 173쪽, 고 183쪽)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

[제4호·제5호·제6호·제8호]

-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8호)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호·제5호·제6호)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활동특성 및
흥미취미
(공통)

10

참정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0 정정사항(공통)



Keyword 정정, 4단 결재



Q55

교감선생님의 장기 연수로 모든 결재를 교무부장에게 전결 권한 위임을 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시 꼭 4단 결재를 해야 하는가요?



A55

학교관리자의 장기연수(출장)는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결이나 전결 처리를 할 수 없으며 교감선생님을 포함하여 반드시 4단 결재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105~106쪽, 중 134쪽, 고 145쪽)

- 자.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반드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차.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는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며 대결 또는 전결로 처리하지 않는다.
- 1)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한다.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결재 단계를 축소할 수 있다.

- 4단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장기연수, 출장 등의 사유에 따른 장기간 공석은 결재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모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인원을 결재 단계에 포함하였음에도 교원 수의 부족으로 4단 결재가 불가능한 경우

- 2) '담당부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장이며, 결재 단계에 동일인이 2회 이상 포함될 수 없다.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학교교육계획, 학교교육계획서



Q5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학교교육계획에 따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학교교육계획'이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학년 초에 제작하는 학교교육계획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A56

학교교육계획은 학년 초 작성하는 학교교육계획서 및 학기 중에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등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학교교육활동 모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5쪽)

라. 제10조제4항의 학교교육계획은 정규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승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이 모두 해당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활동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Q57

운동부 재학생이 선수등록을 위한 자료로 학교생활기록부(II)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57

재학 중인 운동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를 활용하여 제공하며, [민원] 메뉴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할 경우 당해 학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미제공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 30~31쪽, 중 31쪽, 고 31쪽)

[초·중] 타. 재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유예, 면제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 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자유학기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함. 단, 졸업예정자 중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 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부] 메뉴에서 출력함.

[고] 타. 재학생(휴학) 및 학업중단 학생(자퇴·퇴학·제적)에 대해 학생/학부모서비스나 교육정보시스템의 [민원] 메뉴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재학생: 당해 학년도(학년도 종료 전 휴학하는 경우 휴학 당시 학년도), 학업중단학생: 학업중단 발생 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제공하지 않는다.

※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고, 반드시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초, 중, 고)'를 활용함.

※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상급학교 전형자료용 학교생활기록부는 [민원] 메뉴의 '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를 이용하여 출력함.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영문, 한자, 외국어



Q58

사례1

영어 교과와 단원명, 교육활동 주제, 내용 등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영문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사례2

생활중국어 과목의 경우 한자의 사용이 많고 한자 표기도 많은데, 이와 같이 생활중국어, 한문 등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나 한자 동아리 등의 특기사항에 한자표기를 할 수 있을까요?



A58

학교생활기록부는 한글 사용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외국어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단원명, 활동 주제, 특정 단어 등의 외국어 표기보다는 학생의 교과 관련 역량 등에 중점을 두어 한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제4조(처리요령)

③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29쪽)

바. 학교생활기록부의 문자는 한글로 입력하되, 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성명
- 도로명 주소에 포함된 영문
- 일반화된 명사(CEO, PD, UCC, IT, POP, CF, TV, PAPS, SNS, PPT 등)
- 고유 명사(도서명과 저자명 등)

▶ 「2020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문서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활동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기구명, 단체명, 조직명



Q59

사례1

UN, EU, IMF, WHO, OECD, UNESCO 등 국제기구도 기재 불가능한 기관명인가요?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사회교과, 영어교과, 역사교과 등 다양한 교과의 교과서에 나오는 기관들인데 교과 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도 기재해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2

교내에서 자율활동으로 진행한 모의 유엔 기재 가능한가요?

사례3

동아리명으로 유네스코 기재 가능한가요?



A59

기재할 수 없습니다. 교육관련기관(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을 제외한 구체적인 특정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은 기재할 수 없으므로, 'UN, WTO,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도 입력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 [참고자료 4], 중·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Q60

교과 수업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시간에 랜드마크(파리의 에펠탑 등)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랜드마크의 구체적인 명칭을 입력할 수 있는지,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에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 등을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60

랜드마크, 지역명, 유적지명, 관광지명에 대해서는 기재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명칭에 구체적인 상호나 기관명 등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20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 등

【참고】

□* 기관명

-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 교육부 소속기관: 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총 6개 기관)

**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초: [참고자료 4], 중·고: [참고자료 5]) 참조

※ 교육관련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입력함.

□** 강사명

- 특정 강사명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강의(또는 교육활동)의 강사를 말함.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20쪽)

4.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인적·학적사항', 수상 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 학교명, 재단명, 학교 축제명, 학교 별칭 등 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 일체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봉사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인증



Q61

우리 학교에서는 글로벌인증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4품제라고 하는데, 독서품, 언어품, 창의품, 봉사품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력한다면 어느 항목에 입력하면 좋을까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면 되나요?



A61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75쪽, 고 72쪽)

나. 학년·학급 단위의 단체수상(체육대회 응원상, 환경미화상, 합창대회 등)이나 임명장·인증서는 입력하지 않는다.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고 74쪽)

1.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 발표에 따라 외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선행 학습에 따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11학년도 이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에 각종 인증 취득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도서출간, 교지



Q62

‘도서출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간’은 교지와 같은 모든 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ISBN에 등록된 책만을 말하는 것인가요? 학생들과 함께 책 쓰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A62

ISBN 또는 ISSN으로 등록된 도서 출간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과 수업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등에서 교내 문집 등의 제작은 기재 가능하며 이때 ‘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급적 ‘제작하고’, ‘만들고’ 등의 표현을 권장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들었다는 결과보다는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찰·평가되는 학생의 역할과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하시기를 권장하여 드립니다.

관련 근거

▶ 2022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중·고 19쪽)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사. 도서출간 사실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결혼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11 기타사항 등(공통)



Keyword 입력 주체, 수정



Q63

1학기 동아리활동 담당교사가 퇴직 등의 사유로 2학기에 부재 시, 학교생활기록부 항목별 입력 주체가 학교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학기에 입력된 특기사항에 있는 오·탈자는 수정할 수 없나요? 수정 가능하다면 누가 수정해야 하나요?



A63

현재 해당 항목을 입력한 입력 주체가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학기 특기사항을 수정할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내용의 의미 변화가 없는 단순 오·탈자 등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93호)

별표 9(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5.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색 인

(ㄱ)		(ㄴ)	
개근	24	방송부	49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68	봉사활동 기간	60
결시	67	봉사활동 내용	58, 59
경조사	19	봉사활동 시간	61, 62
공동 주최·주관	38	봉사활동	49, 52, 54
관광지명	91	봉사활동계획 주체	56
교과세특	65, 66, 72		
교내상	25	(ㄷ)	
교외상	25	단기결석	22
교육관련기관	38	단체명	47, 90
교지	93	단편	75
기관명	58	대입전형자료	34
기구명	90	대회	59
기부	50	도서 중복 기재	64, 77
기타결석	21	도서명	63
		도서벽지	16
		도서부	49
		도서출간	93
		도우미 활동	56, 59, 60
		독후활동	63, 64, 77
		동아리명	47
		동아리활동	47, 48, 49, 50
		(ㄹ)	
		랜드마크	91
		(ㅁ)	
		면제	14
		(ㅂ)	
		상호명	63
		서술형 입력 항목	14
		수료	12, 24
		수상대상	25
		수업량 유연화	68
		수업일수	24
		수정	94
		순회교육	36
		스포츠 리그	30
		(ㅇ)	
		영문	89
		영주증	6
		오디오북	74
		외국어	89
		외국인 성명	6
		외국학교 재학 사실	10
		외국학교명	10
		원격지	16
		위탁	18, 28, 36, 67
		유급	12
		유예	8, 14
		유적지명	91
		이수시간	36
		인증	92
		임원	32, 34, 48
		임원활동	54
		입력 주체	46, 94
		입학	8

(ㅉ)	
자격증	26, 28
자유학기활동 미참여	70
자유학기활동	72
자율활동	30
자퇴	14
작자미상	76
장기결석	20, 36, 78
재임기간	32, 34
재취학	8
저자명	63, 76
전자책	74
전출입	16, 24, 42, 48, 65, 66, 72, 81
정원 외 학적관리	8
정정 주체	82
정정	6, 28, 81, 82, 84, 86
조직명	90
주관기관명	56
중복 기재	52
중복기간 자료 삭제	80
증빙자료	81, 82
지역명	91
진로탐색활동	42
진로활동	40, 42, 44, 46
진로희망	40, 45
진로희망분야	40
(ㅊ)	
청소년단체활동	47
출석인정 결석	19
출석일수	12, 24
취득연월일	26
(ㅋ)	
특수문자	63
(ㆁ)	
편입학	8
평가	67
표기방식 변경	6
(ㆂ)	
학교교육계획	87

학교교육계획서	87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88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84
학업중단	14, 78, 84
학적변동일	14
학폭 조치사항	80
한자	89
행사활동	30
헌혈	56
희망분야	45
(기타)	
4단 결재	86
ISBN	74, 75

1
인적·학적사항
(공통)

2
출결상황
(공통)

3
수상경력
(중·고등학교)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고등학교)

5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공통)

6
교과학습
발달상황
(공통)

7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학교)

8
독서활동상황
(중·고등학교)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공통)

10
활동사항
(공통)

11
기타사항 등
(공통)

● 기획

이지현(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장)
김도영(교육부 교육연구관)
김성동(교육부 교육연구사)
허혜정(교육부 교육연구사)

박혜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생평가지원센터 센터장)
백은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하은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파견교사)
김은섭(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이선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윤영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 집필진

류청호(충남 입장초)
정준형(울산 강남초)
채희준(경기 시흥월곶초)

육정호(전북 전주효문중)
이도현(대전 대전변동중)
이석재(충북 가덕중)

권승은(충남 당진고)
박유진(울산 울산경의고)
안정선(전북 칠보고)
한승민(경북 경주여고)

● 검토진

송준현(광주 하남초)

정진구(강원 미로중)

박소영(부산 부산과학고)

2022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 질의·회신 사례집

발행일 | 2022년 12월

발행처 |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소 |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8

편집·인쇄 | 화신문화

전화 : 043)882-5583(대표) FAX : 043)883-5584
충청북도 음성군 태정1길 5

자료탐재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https://star.moe.go.kr/web/main/index.do>)

※ 이 사례집은 2022년 학생평가 신뢰도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질의·회신 대표사례 확산을 통해 학생부 정책 이해도 향상 및 학생부 기재역량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